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. 12. 8 선고 2020가단29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1.

판 결 선 고 2021. 12. 8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26. 체결된 증여계약을 31,934,4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1,934,42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원식

별지

1) 원고는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의 판결을 구한다.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된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이행의무는 이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. 그런데 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.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그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. 그리고 청구취지상 별지 3번 부동산의 면적이 44.20㎡로 되어 있으나, 이는 오키임이 명백하므로, 이 판결문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.